

# 定款

사단법인 예비역주임원사연합회

# 사단법인 『예비역주임원사연합회』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(설립 목적)

본 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, 부사관 제도와 정책을 연구·분석하여 대한민국부사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“사단법인 예비역주임원사연합회” 이고, 약칭은 “주임원사연합회” 라 칭한다.

### 제 3 조(소재지)

본 법인의 주소지는 “사단법인 예비역주임원사연합회” (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, 8층 E구역 03호)에 위치하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### 제 4 조(사업)

본 연합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. 부사관 제도 및 정책 연구
- ②. 부사관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
- ③. 부사관 정책 및 학술연구 지원활동
- ④. 사회 공익증진 위한 봉사활동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5 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- ①.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 한다.
- ②. 정회원은 본 연합회 목적과 취지를 지지하며, 부사관으로서 주임원사 직책을 수행한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.
- ③. 준회원은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- ④. 명예회원은 본 연합회 및 부사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.
- ⑤. 후원회원은 본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를 지지하고,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- ⑥.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.
  1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  2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## 제 6 조(가입절차)

본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가입신청을 하며, 회원의 자격심사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## 제 7 조(회비 등 반환청구 금지)

회원은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탈퇴하는 경우 기 납입한 회비, 기부금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
## 제 8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①.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,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 
단, 준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회의에서 의견은 제시 할 수 있다.
- ②. 정회원은 언제나 이사회 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.
- ③.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④. 회원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, 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.
- ⑤. 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## 제 9 조(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)

회원은 탈퇴, 제명, 사망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## 제 10조(탈퇴)

본 연합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합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## 제 11조(정치활동 금지)

본 연합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

## 제 3 장 임 원

### 제 12 조(임원의 구성)

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. 회장 : 1명
- ②. 부회장 : 3명 이내
- ③. 사무총장 : 1명
- ④. 이사 : 15명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- ⑤. 감사 : 2명 이내

### 제 13 조(임원의 선출)

- ①.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정회원인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.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 14 조(임원선출 공고)

본 연합회의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15 조(임원의 임기)

- ①.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감사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- ②.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(결원 임원의 선출)

- ①. 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②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 17 조(임원의 직무)

- ①.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②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.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, 사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.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⑤.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,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

### 제 18 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은 무보수로 하고, 활동비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19 조(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)

- ①. 본 연합회는 필요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 회장, 고문,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②. 회장은 필요시 추가적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회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은 당해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## 제 4 장 의결 기관

### 제 20 조(총회의 구성)

- ①.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을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. 총회의 의장은 연합회 회장이 맡는다.

### 제 21 조(총회의 종류)

- ①.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, 이사회,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### 제 22 조(총회의 의결사항)

- ①. 정관의 변경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②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취득에 관한 사항
- ③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④.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되거나 연합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

### 제 23 조(총회의 소집 및 통지)

- ①.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회의 개최일 7일 전에는 회의 안건, 시간,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- ②.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, 회장은 15일 이내 소집한다.

### 제 24 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
- ①.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.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,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.

### 제 25 조(이사회 구성)

- ①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.
- ②. 이사회는 집행기구로서 연합회의 운영을 관장한다.

### 제 26 조(이사회 의결사항)

- ①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②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- ③. 예산 및 결산의 심의
- ④. 회원 관리 및 규정 제정
- ⑤. 명예회원, 자문위원 등 지정
- ⑥. 기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# 제 27 조(이사회 소집 및 통지)

- ①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감사의 요구,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②. 회의 소집은 회의 3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를 통지한다.

### 제 28 조(이사회 의결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29 조(의사록 작성 및 비치)

- ①. 총회 및 이사회 회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한다.
- ②.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고,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한다.
  1. 회의 일시 및 장소
  2. 출석자 명단
  3. 회의 안건 및 의결사항
  4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③. 의사록은 사무국에 5년 이상 보관한다.

## 제 5 장 재정

### 제 30 조(재정)

본 연합회의 재정은 회비, 특별회비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### 제 31 조(회비)

- ①. 본 연합회의 회비는 회원이 법인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.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, 연회원은 연회비를,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되,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### 제 32 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### 제 33조(자산의 구분)

- ①.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.
 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
  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.
- ②. 매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# 제 34 조(자산의 관리)

- ①. 본 연합회 기본재산을 매매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(이하 “처분“이라 함)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②. 본 연합회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 35조(회계업무)

- ①. 회계는 일반회계로 관리한다.
- ②. 일반회계는 회비, 특별회비, 기부금, 기타 수입금 등과 일반 경상비로 한다.

### 제 36 조(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)

- ①.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. 본 연합회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 37 조(결산서 등)

- ①.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당해 연도 재산 목록, 수지결산서,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 보고서,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.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.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## 제 6 장 정관의 변경

### 제 38 조(정관변경 발의)

- ①. 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 의결로 발의 할 수 있다.
- ②. 회장은 정관 변경 안이 발의된 때에는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부의한다.

### 제 39 조(정관의 변경)

- ①.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.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 7 장 보칙

### 제 40 조(해산)

- ①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를 해산 한다.
  1.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
  2.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때
  3. 회원이 없게 되거나, 본회가 파산된 경우.
- ②. 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,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
### 제 41 조(위임규정)

본 연합회 정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제 42 조(타 법령의 적용)

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'사단법인에 관한 규정', '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', '국방부 및 그 기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' 을 적용한다.

## 부칙

### 제 1조 (시행일)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 2조 (초대임원 선임)

초대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발기인 창립총회시 추대하여 임명한다.

### 제 3조 (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)

본 연합회의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본 연합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 까지로 한다.

### 제 4조 (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)

본 연합회의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“붙임 재산목록“ 과 같다. 끝.



